상품권법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583 발의연월일: 2025. 5. 22.

발 의 자:이학영·임호선·김교흥

김영진 • 한민수 • 김영배

윤호중 · 강득구 · 김기표

백선희 의원(10인)

제안이유

1999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舊 「상품권법」이 폐지되었음. 이후 상품권의 발행업체 및 발행방식, 종류가 갈수록 다변화되고 발행규모 및 상품권 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舊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약 20여년이 지난 현재 상품권 시장의 성장과는 반대로 상품권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범죄악용 및 지하경제 유입으로 경제 구조 왜곡, 발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상품권 이용자 피해문제, 소멸시효가 경과한 미상환상품권 낙전수익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 표준약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구속력에 한계가 있어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들의 해결 및 이용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이에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사회 환원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의 권익 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상품권의 발행과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함(안 제1조).
- 나.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발행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법인인 상품권발행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발행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7조).
- 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최초판매일로부터 5년이며,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5년보다 단축하여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음. 상품권이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제시하는 자에게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하겠다는 뜻을 상품권에 명시하여야 함(안 제9조).라. 금융위원회는 상품권이용자의 보호 및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본금, 출자금 및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간발행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10조).

- 마. 상품권발행자는 상품권이용자 보호를 위해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품권의 발행보증금으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에 갈음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을 계약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바. 제5조에 따른 상품권발행을 신고한 자는 매 분기마다 상품권의 발행실적, 판매실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총액, 분기만료일 현재의 상환총액 및 미상환총액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함(안 제18조).
- 사. 상품권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안제19조).
- 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 자인 상품권발행자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된 상품권 가액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재원을 다른 운영재원과 분리하여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원권리

자 보호를 원칙으로 사업수행기관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안 제25조).

상품권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권의 발행과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 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상품권이용자가 상품권발행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액상품권: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나. 물품상품권: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 권
- 다. 용역상품권: 상품권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 권
- 2. "상품권이용자"란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상품권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3. "권면금액(券面金額)"이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
 - 가. 금액상품권: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
 - 나.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 상품권이용자가 상품권발행자등 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발행일 현재의 가액
- 4. "상환"이란 상품권발행자등이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혂금으로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 2. 승차권 등 예매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공연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연간 상품권 발행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거 나 미상환 상품권 발행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인 자가 발행한 것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상품권의 발행

- 제5조(상품권의 발행신고) ①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영업소 또는 본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 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상호 및 주소
 - 2. 자본금 또는 출자금
 -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에 한정한다)
 - 4. 발행하고자 하는 상품권의 종류・권면금액・상표 및 서식

- 5. 상품권의 발행예정금액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 고하여야 한다.
-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자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발행한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합 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 ③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상품권발행자의 지위승계) ① 상품권발행자가 그 상품권의 발행에 관련된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그 영업에 관하여 법인의 합

- 병·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상품권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승계사실을 시·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상품권 발행폐지의 신고 등) ① 상품권발행자가 그 상품권의 발행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법인인 상품권발행자가 합병 외의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발행자(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을 말한다)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상품권의 기재사항) ① 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상품권"이라는 문자
 - 2. 발행자의 성명 또는 상호
 - 3. 발행자의 주소 또는 주된 영업소나 본사의 소재지
 - 4. 권면금액 및 상환대상물의 내용
 - 5. 상환장소
 - 6. 발행번호
 - 7. 판매일자(최초판매시점에 기재하여야 한다)

- 8. 유효기간
- 9. 소멸시효(「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 10. 발행자의 기명날인
- 11. 발행신고 사실(제5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에 한정한다)
- 12. 제14조에 따른 공탁물의 배당 또는 제15조에 따른 피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13. 제2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 및 원권리자 보호 문구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4호의 사항을 기재할 때에는 금액상품권에는 금액을, 물품상품권에는 물품의 품질·규격·수량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그 가액을, 용역상품권에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그 가액을 기재하여 상환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내용을 상품권이용자가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 같은 항 제5호, 제11호 및 제14호의 사항을 상품권 외의 별지 사용안내서에 기재하여 상품권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권면에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최초판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5년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다.
 - ② 상품권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 • 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하겠다는 뜻을 상품권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이용자가 제2항에 따라 명시된 대로 현금·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상품권 발행의 제한) ① 누구든지 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
 - 2.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이미 신고한 자가 사용하고 있는 상품권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품 권이용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 3. 그 밖에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상품권을 과다하게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 ②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최고한도(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기록되는 상품권의 경우 충전잔액을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상품권이용자의 보호 및 상품권 유통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자본금, 출자금 및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따라 연간발행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연간발행한도 등을 제한하

거나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탁) ① 상품권발행자는 매 분기마다 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그가 발행한 상품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상품권의 권면금액 총액 (이하 "미상환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상품권의 발행보증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등은 상품권발행자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품권 발행 전에 공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상품권발행자가 공탁한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탁하여 야 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족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등은 상품권발행자의 신용상태의 악화 등으로 상품권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시점에서의 공탁금이 미상환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로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탁은 상품권발행자의 주된 영업소 또는 본사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고, 공탁을 한 상품권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등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상품권발행자는 매 분기마다 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공탁금 총액이 미상환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시·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반환받을 수 있다.
- ⑦ 공탁물의 종류, 공탁의 시기, 공탁물의 반환 그 밖에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상품권이용자 피해보상계약) ① 상품권발행자는 제11조에 따른 공탁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이용자 피해보상계약(이하 "피해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경우 해당 피해보상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제11조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 2. 상품권이용자의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 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 계약
 - ② 상품권발행자는 제1항의 피해보상계약에 따른 지급보증액이 제1 1조에 따라 공탁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로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상품권발행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피해보상계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3장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등

- 제13조(상품권의 상환) ①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이용자에게 현금 환급에 우선하여 해당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상품권이용자가 해당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금액상품권의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이용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상품권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공탁물의 배당 등) ① 시·도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공탁을 한 상품권발행자가 미상환 상품권의 잔액을 상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상품권발행자가 공탁한 공탁물을 출급하여 미상환 상품권의 소지자(이하 "미상환채권자"라 한다)에게 배당을 실행할 자(이

- 하 "권리실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미상환채권자는 권리실행자에게 상환받지 못한 금액을 신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④ 권리실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신고 의 기간·방법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 권리실행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금액의 합계액과 소요비용을 합산한 총액의 범위에서 시·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 ⑥ 권리실행자는 출급한 공탁물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및 절 차에 따라 미상환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 ⑦ 제11조에 따라 공탁을 한 상품권발행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배당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없다.
- 제15조(피해보상금의 지급) 제12조의 피해보상계약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 제16조(상품권의 목적외 사용금지) 상품권발행자등은 그 발행된 상품권을 하도급대금 또는 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장부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상품권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권 발행업무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권 발행신고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발행실적 등의 보고) ① 제5조에 따른 상품권발행을 신고한 자는 매 분기마다 상품권의 발행실적, 판매실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총액, 분기만료일 현재의 상환총액 및 미상환총액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다음 달 말일까지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절차, 보고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상품권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① 상품권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상품권정책협의회를 둔다.
 - ② 상품권정책협의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품권정책실

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③ 상품권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상품권관계기관협의회를 둔다.
- ④ 제1항에 따른 상품권정책협의회, 제2항에 따른 상품권정책실무협의회 및 제3항에 따른 상품권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상품권발행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도지사는 수시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상품권발행자의 영업실태를 조 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상품권발행자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1조(보고 및 검사) ① 시·도지사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발행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또는 그밖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영업소를 출입하게 하여 상품권의 발행 또는 상환실태 등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22조(업무개선명령) 시·도지사등은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발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23조(사업의 폐지 및 정지) ① 시·도지사등은 상품권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사업의 폐지 또는 3년의 범위에서 상품권의 발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8조를 위반하여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
 -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
 -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
 - 5. 제11조에 따른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13조에 따른 상환의무를 위반한 경우
 - 7.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작성·비치·보존의 무를 위반한 경우
 -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경우
 - 9. 정당한 이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보고 명령 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① 시·도지사등은 상품권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 1. 최근 5년 이내에 제22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받은 자
 - 2. 최근 5년 이내에 제23조에 따른 사업폐지 및 정지처분을 받은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미상환상품권수익의 출연)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자인 상품권발행자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상품권 가액(이하 "미상환상품권수익"이라 한다)을 1년 단위로 합산하여 「서민의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연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서민금융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출연받은 미상환상품권수익을 다른 운영 재원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③ 서민금융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출연받은 미상환상품권수익을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사업수행기관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 조에 따라 원권리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26조(권한의 위임)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을 발행한 자
 - 2. 제23조에 따른 상품권 발행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정지 기 간 중에 상품권을 발행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에 따른 공탁이나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을 발행한 자
 - 3.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상환 또는 환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자

- 4.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품권으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상품권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자
- 5. 제22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상환상품권수익을 출연하지 아니한 자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1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2. 제8조를 위반하여 상품권을 발행한 자
 - 3. 제9조제2항에 따른 명시의무를 위반한 자
 -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비치·보존하 지 아니하거나 장부 등에 허위로 기재한 자
 - 5.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6.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지사등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상품권의 발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자로서 제5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1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 「상품권법」 제25조에 따라 상품권발행자가 출연한 미상환상 품권수익의 관리 및 운용
 - 제41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상품권법」 제25조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출연받은 미 상화상품권수익

제2장제7절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미상환상품권수익의 지급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미상환상 품권수익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미상환상품권수익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미상환상품권수익에 갈음하는 금액을 미상환상품권수익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